

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7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9. 27. 이쌍자 의원 등 7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0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나. 군수의 책무 및 아동·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다.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라. 사업의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마. 홍보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35호
- 예고기간: 2023. 9. 27.(수) ~ 2023. 10. 6.(금) [9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.
 -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마약류”, “유해약물” 과 이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의하여 신뢰성을 높였음.
 - 군수의 책무, 아동·청소년을 위한 조치(안 제3조, 안 제4조)
 -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음.
 - 예방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 -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제시하였음.
 - 사업의 시행(안 제6조)
 -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 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 -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.
 - 홍보(안 제8조)

-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폐해에 대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음.

-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9조)

-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.

-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마약류와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할 시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